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46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2021. 1. 26.(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1. 1. 15.
- 회부일 : 2021. 1. 18. (의안번호 : 21 - 6)

2. 제안이유

-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존속기한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 (안 제2조의2)
 -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3월 16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존속기한 종료 시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안 제2조의2)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3월 16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.
-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